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) 공고 대상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반송사유	발급기간
김○연	2007.12.22.	중부대로820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강○산	2007.12.02.	중부대로735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안○홍	2007.12.12.	중부대로788번길 20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신○환	2007.12.13.	중부대로788번길 20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김○연	2007.12.11.	중부대로788번길 15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김○현	2007.12.26.	중부대로746번길 21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최○영	2007.12.11.	어정로62-28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황○인	2007.12.21.	어정로62-28, **	폐문부재	2025. 1. 1.~2025. 12. 31.

2) 공고 기간 : 2025. 1. 3.(금) ~ 1. 18.(토) [15일간]

3) 발급 신청 시 준비사항

1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cm x 세로 4.5cm (여권용 사이즈)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

2) 신분증명서 (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
(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(신분증 지참)이 동행)

※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 추가)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
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[문의전화 : 031-6193-6783 / 담당자 : 박설희]

2025년 1월 3일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장 [인]

